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수행능력평가대상 입찰 관련 질의

|| 질 의 ||

○○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시 공동수급협정서(A+B 사)를 제출(참가자격 불충분)하여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2)가 가격입찰시 1개업체만 공동수급구성원을 변경(A+B+C)하여 협정서를 제출, 가격입찰에 참여 하였때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되는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거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 참여업체(2) 중 1개 업체만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참여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물품 제조·구매관련 질의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재활기반을 마련코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건립한 사업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8호 “바”목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된바,
- 귀 질의의 경우 쓰레기 종량봉투 구매시 해당물품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라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물품(금연) 구매입찰 적격심사관련 질의

■ 질 의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1.9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시 신인도 가점 부분에서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게 평점2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를 하지 않았을때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사후관리, 물품 공급지원 협약서를 제출하고 의약품 관리 약사, 대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를 기술자로 보아 가점 적용이 가능한 지

회신

- 행정자치부 예규 제229호인「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 5)- III. 신인도 점수 중 1 - 라 - B에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점(2)를 적용토록 규정된바,
-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문상 사후관리를 위한 A/S망 또는 기술자 확보에 대한 가점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심사항목 “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B”에 평점(2점)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질의

질의

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07. 1.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 ① 입찰공고일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 지, 가격입찰 공고일로 하여야 하는 지
- ② 공동이행 방식을 하용 공동으로 참여 하였을때 공동도급 대표사만 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지 여부

회신

-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용역사업집행공고계획의 공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계획공고를 입찰 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와 함께 하였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을 입찰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안내공고와 입찰공고를 별도로 하였다면 안내공고일을 입찰공고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② 행정자치부 예규 제189호('05.12.3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서 공동도급체의 구성 자격요건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 귀 질의의 경우 대표사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구성원도 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실적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 질 의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가격입찰 제1순위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실적에 대하여 2순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 실적에 대한 재조사 결과 제출실적의 일부만을 인정기로 함으로써,
- ②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탈락이 예상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보완·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출기한 마지막 날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공사는 2004.6.11 계약하여 2007.7.1 준공예정인 공사로, 실적발급 기준일인 2006.12.18일 현재 총 공정율 47.1%의 장기계속공사로서 인수증명서 등 작성은 없었으나,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측 제공 실적증명서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1.12)〈별표1〉 1-3-나-⑥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 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②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학술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 질 의 ■

2007년도 ○○군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군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병실태 조사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용역으로서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30호)』VI-5- 규정예 의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하수슬러지 공사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중인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를 '05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으로 추진 계약체결한 것과 관련
- 시공을 완료한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제8호 “아”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사업자와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시공경험평가 관련 질의

【 질 의 】

- 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어느 1개사를 제3자로 인정하여 구성원별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호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채권양도·양수를 발주처에서 승인하였다면 현시점에서 채권 양도·양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의 전문공사(도장공사업)의 적격심사(시공경험 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별표1> Ⅱ 와 Ⅲ 중 어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장공사업이 건설업등록증 기준 2007.2.16. 등록되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동업체가 타업체로부터 받은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시공경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별도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해당 공사의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업종별 시공경험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7호)』 제2조제3항제2호에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Ⅲ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라면 시공경험은 <별표 1> Ⅲ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일부 기성실적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기록물 DB구축 사업의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질의

- ①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본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인 중요기록물(지적관련기록물 및 일반기록물 등)DB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위 사항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② 용역계약의 자격요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동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경우 한국○○본부가 DB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10.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 관련 질의

【 질 의 】

“○○○ 문화재 보수공사”입찰과 관련 적격심사시 당해공사업종(문화재)에 대한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실적평가 방법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07. 1.1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 II.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명시된 바, 당해공사의 입찰공고일이 2007. 5. 9일 이라면 2004. 5. 8 ~ 2007. 5. 9일까지의 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당해공사업종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Ⅱ.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체결관련 질의모음

1. 「전시물(설계·제작·납품·설치포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질의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생태계 학습관」전시물 제작·납품·설치에 대하여 설계를 포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요청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 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생태학습관에 전시물 제작·납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 설치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디자인 공모 공동참여자 조형물의 시공건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충혼탑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 제안공모에 선정된 조형물의 실시설계업자와 공동참여한 업체에게 조형물의 예술성 및 창작성 등을 감안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시공건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 신

- 귀 질의내용은 제4호"아"목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공모 또는 건축설계경기이나 시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으며,
-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공모에 의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기반사업으로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 제작설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평가"에 대한 별다른 세부기준이 있는지, 동법 시행령 제44조2항의 경우에는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이 있으나, 시행령 제43조 1항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 바,
- 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참고하여 입찰공고 시 제안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4. BSC(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용역 입찰방식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BSC(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에 대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만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시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관련근거 사항이 있는지
- 이번에 구축코자 하는 BSC시스템 구축 용역은 총액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용역에 대한 입찰방식을 “단순공개경쟁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여도 법령이나 지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가장 유리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식기반사업등과 같이 고도의 지식정보를 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거나 창작성등이 요구되는 계약은 단순한 가격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유리하므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공고후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후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바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의계약 체결이 안되면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의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5.2.7)Ⅳ-2-나-②-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6. 디자인 및 설계용역에 채택된 후 그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및 설계 용역 공모(군계 표지판 / 사업비 약1억원)에 응하여 우수 디자인 및 설계로 채택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차호의 의거 수의계약(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호 차목에 의한 수의 계약은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모가 이에 해당되나 귀질의의 경우 설계를 공모하여 시공까지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며
- 귀 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질의

■ 질 의 ■

-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버구입(오라클 등 상용S/W포함) + 프로그램 개발 (가격비율 3:1)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 ②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보면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지정을 제안서 제출 시 참가업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으로 계약체결을 의뢰 할 경우 심사위원 추천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달청과 협의하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경우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협상계약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질의

■ 질 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의규정에 의한 예술성, 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할 경우

- ① 예술성,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의 경우에도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지역제한하여 경쟁입찰 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질의1”의 제한경쟁입찰로 지역제한을 할 경우 조형물 설계, 제작, 설치를 기술용역으로 분류하여 건설기술용역(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지역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③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④ 디자인등은 예술성 및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로써, 디자인(설계)업체에 제작, 시공까지 자격을 주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①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제한 기준은 공사부분, 용역부분 중 규모가 큰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② 발주자가 계약목적물 전체를 지역제한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 ③ 발주자가 공정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발주자가 업체의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사항입니다.

9. 수의계약금지대상 및 협상 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① 지방의원 및 단체장 등 수의계약금지 대상자가 하도급계약도 금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협상계약체결기준 등 심사위원 3배수(교육시 2배수까지)를 농촌지역 등을 감안(각 사업부서에서 추천인력이 5명도 어렵다함)하여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 회 신 】

- ① 하도급 계약은 수의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행정자치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은 지식기반사업에 국한되는 협상계약(예:학술용역, 소프트웨어 개발등) 기준이며 이외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에 의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수의계약금지대상 및 협상 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① 문화재발굴조사용역 금액이 80,000,000원으로 지역제한 한도금액에 해당되어 지역으로 제한하여 재공고 입찰까지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운영요령” 10페이지를 적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은 제안서(80점)와 제안가격(20점)을 평가하여 1순위자와 협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계약 제안서 공고시 “일반입찰공고”와 같이 용역금액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① 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입찰을 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② 계약담당자의 계약의 특성판단에 따라서 전국입찰 또는 지역제한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